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강화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62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09. 22.
3. 회부연월일 : 2025. 0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좌우 옆면 창유리에 현수막·비닐 등을 부착하여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8항·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u>자동차</u> 는 제외한다.	3. ----- ----- ----- ----- ----- ----- ----- ----- --- <u>자동차와 어린이통학버스</u> <u>는</u>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 신설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규정은 ① 일반 규정과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특별규정의 경우로 나뉘어 있음.

일반 규정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의 가시
 광선 투과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²⁾.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³⁾됨.

1)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3)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2만원을 부과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⁵⁾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⁶⁾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은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⁷⁾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4조제3항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⁸⁾,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⁹⁾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적용하고, 현수막 등의 부착을 금지함으로써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4)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는 것

6)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제3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약칭하고 있음

7) 「자동차 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9)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30만원을 부과함.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의무 및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적 안전장치로서 외부 시인성 확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서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는 어린이통학버스가 해당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인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위와 같은 규정들을 위반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보다 낮은 창유리를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만으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현수막, 비닐 등 부착 금지 신설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붙이는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함¹⁰⁾).

옥외광고물 중 자동차 등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부터 제5장(제1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창문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결국 창문에 현수막 등을 부착한 차량은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광고물 표시가 불가함.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일 필요는 없는 관계로¹¹⁾¹²⁾¹³⁾ 사업용

10)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 ... (중략)... 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1) 「도로교통법」

제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후단 생략)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자동차가 아닌 어린이통학버스의 현수막 등 부착 금지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개정안 제53조제9항의 신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관련 사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할지 여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취지나 타 법의 규정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자동차의 기술적 안전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운전자의 준수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는 바, 법체계 정합성 관점에서는 현수막 부착 금지와 같은 '상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직접 신설하는 것보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단순한 차량 관리의 차원을 넘어 어린이의 생명, 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도로교통법」에 핵심 안전 규정을 명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투과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강화 및 현수막 부착 금지를 통한 어린이 방치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며 현수막 등 부착 금지 규정은,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창문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장치 관련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조 문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2조(정의) 24호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자동차 차체 또는 좌석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제2조(정의) 32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체육시설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 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
§19 ⑧	황색 도색	- 통학버스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19 ⑨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19 ⑩	정지표시장치(*14.2.21.)	좌측 옆면 앞부분 정지표시장치 설치
§25 ②	승객좌석의 규격	가로·세로 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 46센티미터 이상
§25의2	접이식좌석	30인승 이상 승합차에 설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함
§27 ⑥	좌석안전띠장치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29조 ④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48조 ④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50 ③④	간접시계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운전자가 교통상황 확인 가능하게 설치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53의2	후방카메라 후방경고음 설치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53의4	하차확인장치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는 구조 등
§94 ③	운전자의 시계범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에서 어린이통학버스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